**비밀유지 약정서(CA)**

**매각대상 자산명(희망 매입 자산명) : 동작구 신대방동 686-44 소재 토지 및 건물**

* 법인(개인)
* 정보수령 회사명 (성명) : (이하 “정보수령인”이라 한다.)
* 정보수령 회사주소 (주소) :
* 정보수령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민번호) :
* 정보수령 회사 대표자 성명 :
* 정보수령 회사 업무 담당자 부서 및 성명: (이하 “정보수령인”이라 한다.)
* 정보수령 회사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 정보수령인 E-Mail (E-Mail):

당사는 코람코동작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매도인”)는 동작구 신대방동 686-44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매각 대상자산”)을 매각과 관련하여 정보(이하 “관련자료”)를 정보 수령인에게 제공하고, 정보수령인은 대상물건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항을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 다 음 –

1. “정보수령인”은 “매각 대상자산”에 대한 모든 “관련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 약정서상의 비밀유지를 요하는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이하”관련자료”라 한다.)의 범위에는 “매각대상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관련된 교섭, 토의사항, 그 내용 및 제반 조건들을 포함한다.
2. “매도인”은 “관련자료”를 “매각대상자산”에 대해 매수 제안 등을 위하여 “정보수령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수령인”은 모든 “관련자료”를 ”매각대상자산”에 대한 매수를 위한 검토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3. ”정보수령인”은 ”매도인”과 ”매각대상자산”에 대하여 토의한 사실이나 거래조건, 진행상황 등 ”매각대상자산” 및 ”관련자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정보수령인”은 모든 “관련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매도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제공된 모든 “관련자료”를 반환 또는 폐기함은 물론 “관련자료”를 이용하여 자체 작성한 자료 등도 폐기한다. 위의 “관련자료” 등의 반환 및 폐기에도 불구하고 “정보수령인”은 본 약정서상의 비밀보호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5. “정보수령인”이 “매각대상자산”과 관련하여 “관련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을 때에 반드시 “매도인”의 사전 승낙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수령인”은 본 약정서상 “정보수령인”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제3자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정보수령인”은 제3자의 본 약정서상 의무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6. “정보수령인”은 “매각대상자산”과 관련한 참여를 위하여 “관련자료”의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비밀적 성격 및 본 약정서의 조건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보수령인” 내부의 임직원에 한하여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수령인”은 담당 임직원이 본 약정서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게 하여야 하며, 담당 임직원의 본 약정서상 의무의 준수 및 위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정보수령인”이 본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매도인”은 “정보수령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중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수령인”은 “매도인”의 중지 및 시정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만일, 위반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보수령인”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8. “정보수령인”은 “매도인”이 “관련자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등의 독점적인 소유권자임을 동의한다. 본 약정서를 통해 “정보수령인”에게 “관련자료”에 관한 어떠한 지적재산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9. 본 약정서에 명기된 사항들은 “매각대상자산”의 매각 종료 이후에도 본 약정서 제출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10. 본 약정서의 규율과 해석, 집행 등의 모든 사항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르며, 본 약정서상의 분쟁과 관련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023 년 월 일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정보수령인 : (인)

**주식회사 부동산플래닛파트너스 귀중**